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29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3.

다. 회 부 일 : 2025.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연구개발과 기술이전·기술지도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과 정보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혁신과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u>관리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절차</u>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관련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안 제6조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 등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임.
- 다만, 이미 민간에서 활발하게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을 일부 구축하거나 연구개발과정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등 민간의 활동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으므로 민간이 자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어려운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